

# 용수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‘공공요금 산정기준’보다 계약이 우선하고, 당사자간 단가 재협의 불성립시 법원이 직접 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
2024.12.18

동두천시가 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에너지 기업인 A사, B사를 상대로 임시용수 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(유) 세종은 A사, B사를 대리하여, 제1, 2심에서 A사, B사에 대하여 전부승소에 준하는 일부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.

## 1. 사건의 개요 및 쟁점

A사, B사는 동두천시로부터 하수재이용시설에서 처리한 재이용 공업용수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다만 하수 재이용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생활정수(이하 “임시용수”)를 공급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.

이 사건 업무협약에서는 임시용수의 공급단가 구성 부분 중 전기료 등 운영비는 일단 150원/m<sup>2</sup>로 하되 향후 공급시점에서 재협의 하며, 재이용 공업용수의 공급단가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되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공급시기가 2018. 8. 이후로 지연될 경우에는 임시용수를 계속 공급하며 이 경우 그 공급단가는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단가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. 당사자들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후 공급단가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, 그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하수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이 결국 중단되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동두천시는,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서 정한 임시용수 공급단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,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상의 ‘총괄원가’를 기준으로 임시용수 사용대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.

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( i )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당사자간의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업무협약에 우선하는지, ( ii )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 무산을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.

## 2. 법원의 판단

제1심 법원은, ( i ) 기획재정부 훈령인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동두천시와 A사, B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총괄원가를 기초로 임시용수 공급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그러나, 법원은 ( ii ) 하수 재이용시설 사업이 무산된 것은 동두천시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2018. 8. 이후에는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A사, B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으며 결국 임시용수 사용대금은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서 정한 임시용수 공급단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항소심 법원은, 기본적으로 제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. 다만,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임시용수 공급단가 구성 부분 중 전기료 등 운영비 조정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법원이 위와 같은 조정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공급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전기료 등 운영비를 산정하였습니다.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아니하여,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.

### 3. 이번 판결의 의의

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대상이 된 거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부(기획재정부) 훈령보다 당해 사법상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.

또한, 당해 사법상 계약에 당사자들이 공급시점에 단가를 재협약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,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직접 당해 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습니다.

법무법인(유) 세종은 고객 법무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, 이 사건 각 협약 규정과 판례의 태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각종 통계,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여 A사, B사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, 결국 고객이 원하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.

### 관련구성원

#### 배호근

변호사

02-316-4006

hkbae@shinkim.com

#### 김형원

변호사

02-316-4287

hywkim@shinkim.com

#### 이승혁

변호사

02-316-4235

shyulee@shinkim.com

#### 김아주

변호사

02-316-7203

ajkim@shinkim.com

